

## 1. 지방교육재정 범위와 배분구조

교육재정 구조를 새로운 교육환경과 내용에 맞게 재구조화(초·중등교육재정의 여유분을 고등·평생직업교육재정으로 전용)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중심에는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초·중등교육의 학생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고등교육비는 여전히 OECD 평균에 미달인 초·중등교육비와 고등교육비 지출의 불균형에 대한 시각차가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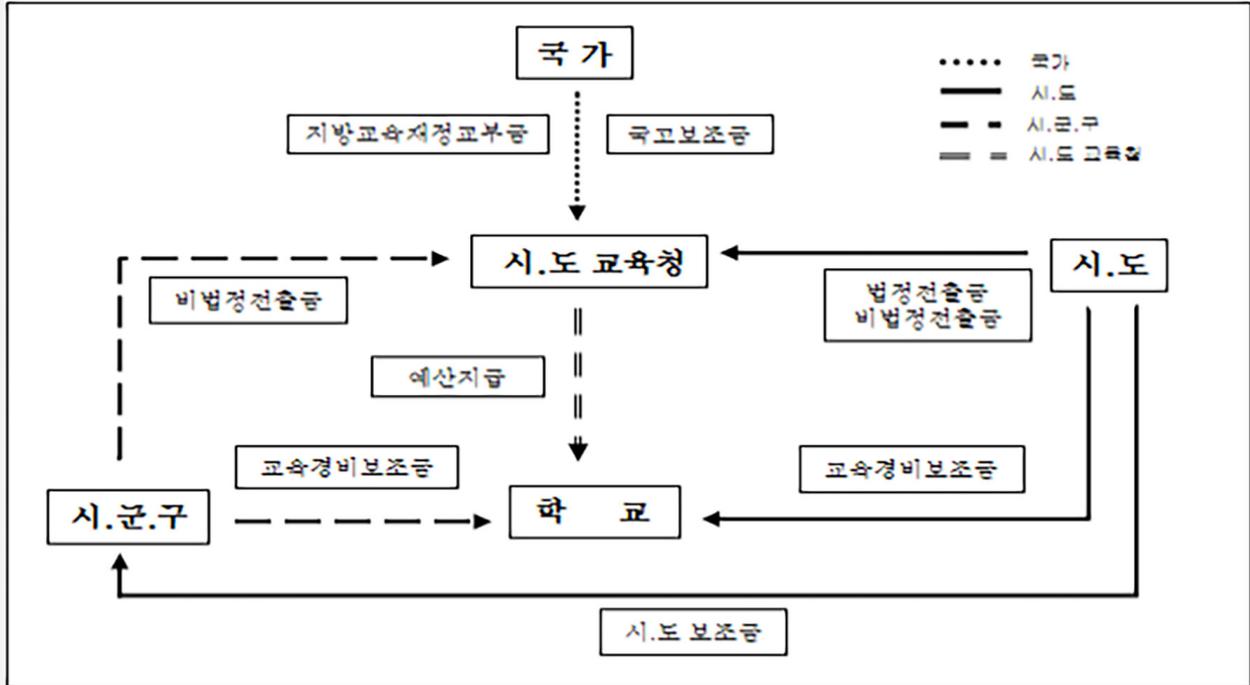
이러한 논쟁이 기획재정부 등의 교육계 외부와 교육계의 대립이라면, 교육계 내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에 대한 개선 논란도 상당하다. 이에 현행 지방교육재정 배분구조의 현황과 향후 주요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방교육재정 범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 및 지출하는 일련의 공경제활동(public economic activity)(반상진 외, 2014)으로서, 모든 교육 활동의 기반이 되며 사실상 교육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 따라서 교육제도의 성패 여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독립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제도입된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주요한 특징인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 및 자율화를 기본 가치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의 범위는 1차적으로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구성하는 재원의 수입과 지출, 운용, 환류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의 주체는 재정적으로도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적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행정구조는 국가, 시·도(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 단위학교로 구성되며 국가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고, 시·도는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을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한다. 시·군·구도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비법정전출금을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학교회계는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성된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로부터 직접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표시열 외, 2012; 하봉운, 2015).

사업에 따라서는 시·도교육청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자체의 대응자금을 더할 뿐만 아니라, 시·군·구가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자체 대응자금을 더해 교육사업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를 통한 지출 이외에 시·도와 시·군·구는 일반회계를 통하여 직접 교육과 연관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예: 도서관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초등돌봄 운영 및 지원, 마을학교 운영 등). 그러나 시·군·구에 대응하는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과 달리 법인격을 부여받지 않아 독자적인 예산편성권과 지출권을 갖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표시열 외, 2012).



출처: 표시열 외(2012), p.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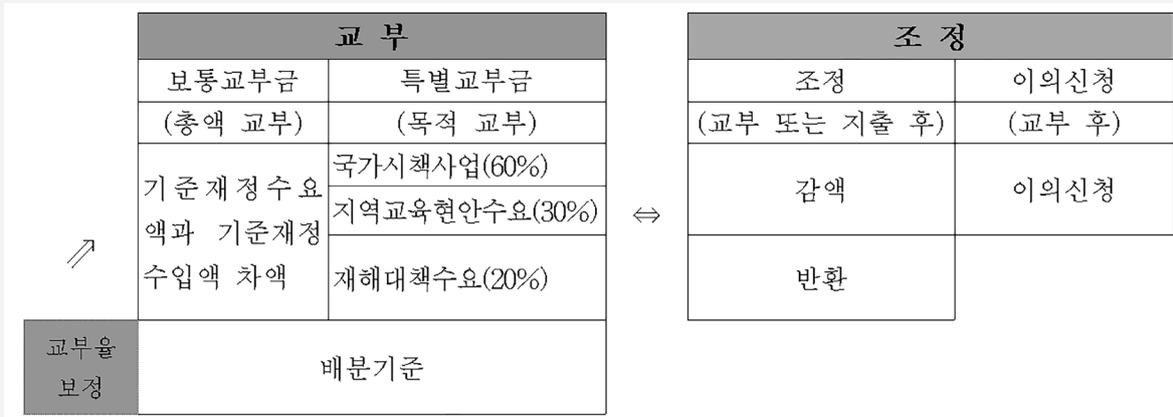
[그림 1] 지방교육재정의 흐름도

## 2) 지방교육재정 배분구조

지방교육재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의 국가의 무상의무교육 여건 조성과 교육재정 법정주의(法定主義)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등을 통하여 내국세, 교육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등의 일정 비율 또는 전액을 확보·배분·전출토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제도로서 보장받고 있다.

교육재정 법정주의는 국민전체에 대한 관련성이나 교육영역의 공공재로서의 최대가치 이외에도 헌법 제31조의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즉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재원 배분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서비스 유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여건을 형평화하는 기능을 보장하여 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방교육재정 배분은 관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분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크게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총액으로,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의 3%를 국가시책사업(60%), 지역교육현안수요(30%), 재해대책수요(10%)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교부 시기에는 교부율 보정 등을 통하여 배분기준을 조정하게 되며, 교부 혹은 지출 후에는 감액 또는 반환을 거치게 된다(김혜자 외, 2016).



출처: 김혜자 외(2016), p.108.

[그림 2] 지방교육재정 배분구조

## 2. 지방교육재정 배분 관련 주요 이슈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의 불투명성: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과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7조<sup>1)</sup>와 시행령 제5조<sup>2)</sup>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일반 회계 전입금이란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외),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용지부담금의 수입예상액 산정기준은 교부금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01조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교육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교육자원 배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 중 교부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장치로 인식되지만, 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교부방법에 따라 지방분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교육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원 배분은 실무적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서 교육재정 관련 법령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이 조항에서 지방분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그리고 총액교부방식이다.(송기창, 20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sup>3)</sup>와 그 시행규칙 제7조<sup>4)</sup> 수요를 하나의 소항목으로 간주할 경우 소항목은 20~47개에 이르고 있다. 2018년 이후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을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 측정을 위한 소항목은 30개에 달한다(송기창 외, 2021).

기준재정수요액은 일정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보편적·표준적인 행정수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은 실질적인 사업수요라기보다는 재정수요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일종의 표준경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기준재정수요 산정시 측정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수요액 산정의 정확성이 약화되는 반면, 측정항목을 세분화할수록 다양한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송기창 외, 2021).

이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 산정시 측정항목을 세분화하여 항목별로 측정단위와 단위비용을 적용하여 수요액을 산출하고 있으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의 지나친 세분화와 기준재정수요항목의 예산편성 요구에 따른 갈등 등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송기창 외, 2019; 송기창 외, 2021). 측정항목이 세분화된 데에는 정확한 수요 산정이라는 목적 외에도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특정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총액으로 배분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시책사업비처럼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시·도교육청의 가용재원 규모를 축소시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한다.(송기창 외, 2019; 장휘국: 2015)

-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④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와 같다.



〈표 1〉 2005년도 이후 현재까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주요 변화

연번	2005-07년	2008-09년	2011년	2012-13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1년
1	교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2	교원인건비 가산금	학교· 교육과정운영비	학교· 교육과정운영비	학교· 교육과정운영비	학교· 교육과정운영비	학교· 교육과정운영비	학교· 교육과정운영비	학교운영비
3	학교신설비	교육행정비 -균형교육비	교육행정비 -균형교육비	교육행정비	교육행정비	교육행정비	교육행정비	교육행정비
4	재정결함보전	학교시설비	학교시설비	교육복지지원비 -지역간 균형교육비 -계층간 균형교육비	교육복지지원비 -지역간 균형교육비 -계층간 균형교육비	교육복지지원비	교육복지지원비	교육복지지원비
5	학교운영비 및 그 밖의 경비	유아교육비	유아교육비	학교시설비	학교시설비	학교시설비	교육기관등 시설비	교육기관등 시설비
6		방과후학교사업비	방과후학교사업비	유아교육비	유아교육비	유아교육비	유아교육비	유아교육비
7		재정결함보전	재정결함보전	방과후학교 사업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8		학교학급 통폐합지원	학교기본 운영비확대	재정결함보전	재정결함보전	재정결함보전	재정결함보전	고교 무상교육지원
9		학교신설 민관협력확대	학교학급 통폐합지원	학교기본 운영비확대				재정결함보전
10			학교신설 민관협력확대	학교학급 통폐합지원	학교학급 통폐합지원	학교학급 통폐합지원	학교학급 통폐합지원	학교학급 통폐합지원
11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	학교신설 민관협력확대	학교신설 민관협력확대	학교신설 민관협력확대	학교신설 민관협력확대	학교신설 민관협력확대
12			경상적경비절감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	
13			기초학력 미달학생감소	경상적 경비 절감				
14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비율	외부로부터 교육투자유치	외부로부터 교육투자유치	외부로부터 교육투자유치	외부로부터 교육투자유치	외부로부터 교육투자유치
15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소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	
16				사교육비절감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지원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지원	
17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비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		재정집행 효율화지원
18				고등학교 졸업생취업제고				
19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5개 측정항목, 7개 소항목	7개 측정항목, 20개 소항목	14개 측정항목, 30개 소항목	19개 측정항목, 47개 소항목	12개 측정항목, 38개 소항목	15개 측정항목, 45개 소항목	14개 측정항목, 38개 소항목	13개 측정항목, 30개 소항목

교육부 보통 교부금 각 연도별 국회보고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 참조.  
출처 : 이광현(20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함

## 2) 특별교부금 비율 논란

특별교부금은 일반회계 예산이나 예비비와 달리 국회, 감사원, 예산당국의 통제 대상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그동안 특별교부금 운용에서의 교육부의 과도한 재량성과 자금운용의 불투명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감사원, 2008).

또한 특별교부금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다는 점에서 특정목적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내국세의 20.27%의 4%로 과도하다는 점과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60%)의 경우 교육청이 매칭(matching fund)하여 재정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경직성과 비효율 및 재정압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반상진, 2015, 김지하 외, 2016)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별교부금의 규모 축소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2017년 12월 30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종전 내국세 교부금의 4%에서 2018년부터 3%로 축소하여 보통교부금의 비중을 늘렸다. 되어 있다.

〈표 2〉 2017년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별교부금 변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특별교부금 재원	내국세 20.27%의 4%	내국세 20.27%의 3%
특별교부금교부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li> <li>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li> <li>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li> <li>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li> <li>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li> </ol>

## 3. 지방교육재정 배분 관련 개선방향

### 1)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간소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하든지간에 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기만 하면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이 많아지면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배분과정에서 배분액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측정항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즉,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이 많아지면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은 2007년까지 적용된 방식보다 지방분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교부금을 총액으로 배부하는 것은 교부금의 정의상 당연한 일이다. 원칙적으로는 교부금 집행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므로 교부금의 산정기준이 되었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근거에 특정사업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나 측정항목과 관계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사업부서나 이해집단이 측정항목별 산정액을 최소 편성금액으로 인식하여 예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동을 제약할 수 있다(류민정, 2013; 송기창 외, 2019). 따라서 총액배분이라는 보통교부금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측정항목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국가시책사업 성격의 측정항목을 폐지함으로써 수요산정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산정된 기준재정수요의 예산한도액 설정 기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송기창 외, 2021).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기준도 마찬가지다. 자체수입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 반영비율을 100%로 할 경우보다 80%로 할 경우 지방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다 넓힐 수 있다. 현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의 경우 표준세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100%를 수입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방의 자율성은 매우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방 유보율을 높일 경우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성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중에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2) 특별교부금 교부율 인하

2018년 특별교부금 규모가 내국세 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특별교부금은 종전의 규모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특별교부금 변화 추이

(단위:억 원)

구분	특별교부금 규모				내국세 대비 특별교부금 비율
	계	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	재해대책	
2013	14,514	8,708	4,354	1,452	20.27%의 4/100
2014	14,564	8,738	4,369	1,457	"
2015	13,870	8,322	4,162	1,387	"
2016	15,217	9,130	4,565	1,521	"
2017	17,827	10,696	5,349	1,783	"
2018	13,838	8,303	4,151	1,383	20.27%의 3/100
2019	17,643	10,623	5,452	1,567	20.46%의 3/100
2020	15,449	9,269	4,703	1,477	20.79%의 3/100

주) 최초교부액 기준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

특별교부금은 초·중등교육과 관련해 국가가 사용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가 내국세분 교부세(19.24%)의 3%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3%로 낮춘 것은 환영할만하다. 다만, 지방교육자치가 발전하고 초·중등교육이 지방사무로 정의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재원과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 조정의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발전과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교부금 규모는 현재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즉 특별교부금의 교부율은 내국세 교부금의 2%로 하향 조정하고 축소된 재원을 보통교부금에 포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송기창 외, 2021).

[참고문헌]

- | 감사원(200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감사원.
- | 김혜자·엄문영·김민희·이현국·하봉운·김용남·김지하(2016). 2015년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 류민정(2013). 유보통합: 행·재정적 관점에서 본 유아교육 및 보육의 실태와 통합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 | 반상진(2015).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교육정치학연구(한국교육정치학회), 22(3), 109-133.
- | 반상진·김민희·김병주·나민주·송기창·우명숙·주철안·천세영·최준렬·하봉운·한유경(2014), 교육재정학, 서울: 학지사.
- | 송기창(2008), 국가 교육자원 배분과정의 효율화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7(1).
- | 송기창(2008), 지방교육분권의 성과와 과제-재정분야-,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분권 세미나, 2008. 9, 46쪽
- | 송기창·우명숙·윤홍주·이선호(20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 개선방안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 송기창·하봉운·윤홍주·오범호·김지연(2021). 지방교육재정 수요 전망과 자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 이광현(2015). 학생 수 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 개선 방향 및 과제.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 발표자료집.
- | 장휘국(2015). 지방교육재정 위기 현황 및 대책.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15. 10. 18.).
- |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
- | 표시열·곽창신·이원희·임준형·하봉운(2012).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방안.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 | 하봉운(2015).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현안과 제도적 개선방안. 지방교육재정의 현안과 제도적 개선 모색 발표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